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1] <개정 2022. 7. 27.>

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방법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

(제2조의2제4항 관련)

1. 성능확인 검사방법

품목	검사항목	검사방법 및 합격기준
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	본체용기의 내압, 방사(放射)시험	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

2.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

가.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사업장에 설치된 소방용품 중 검사를 위한 세부 목록을 소방청장(제2조의2제8항에 따라 성능확인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원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에게 제출할 것

나. 소방청장은 제출된 소방용품 세부 목록을 로트로 구성하여 검사대상소방용품을 무작위 추출하고, 그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할 것

다.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나목에 따라 통보받은 소방용품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할 것

라. 검사대상소방용품의 추출수량

로트 크기	추출수량
2개 이상 15개 이하	2개
16개 이상 50개 이하	3개
51개 이상 150개 이하	5개
151개 이상 500개 이하	8개
501개 이상 3,200개 이하	13개